산업안전 Q&A



당사는상시근로자수가 298명정도이며,인접지역에 2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각기 번지수가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1공장,2공장 형식으로 구성)이 2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1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하는지
- 2 안전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 2008. 6. 30)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이때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개인사업주또는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이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 있고,이들공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가 300 인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층의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는 작업장의 측면 지상을 통행하는 사람을 낙하물에 의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외부 비계 등에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방호선반 등을 설치하는데 지상의 통행로를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박스형 터널식 통행로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낙하물 에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건축물 외부 비계 등에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호선반 등의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를 추가로설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측벽 등의 장소나 갱폼 등의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비록 지상의 통 행로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하물방 지망을 위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 Q&A

저는일일출력 인원 150명 정도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올가을이후 SARS 등전염병의 창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단숙식 등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번 근로자 건강진 단시 단체 예방접종을 시행코저 하는데 그 소요비용의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 및기준)을 따르도록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근로자 단체예방접종은 동기준 별표 2 제6항(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하여 당사의 안전시설물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이에,안전시설을 복구 및 설치하고자 하는데,그 비용이 현도급 안전시설비의 50% 책정되어 있는 것을 초과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를 위해서 총도급액의 안전관리비 추가 계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총도급액 안전관리비를 안전시설비의 50%를 높게 책정하여 집 행가능한지, 초과하더라도 복구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시설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실집 행금액을 받을 수 있거나 추가 안전관리비 책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따라 『안전시설비 등』 은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하나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 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발주자 또는 자기 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계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